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338
----------	-------

발의연월일 : 2026. 4. 15.

발 의 자 : 이만희·권영진·서천호  
김기웅·엄태영·이성권  
김상훈·진종오·이종배  
유용원·김석기·김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 교류 증가 및 글로벌 기업·단체 등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을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하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현행법에서는 증인·참고인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국어에 능통하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통역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통역인의 지정 요건 및 자격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인 경우 위원장이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의사전달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국회의 심의 등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조제 9항 신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통역인을 지정하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생   략) <u>&lt;신   설&gt;</u>	제5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u> <u>출석하는 사람이 국어에 능통</u> <u>하지 아니하여 의사소통이나</u> <u>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u> <u>우 위원장은 통역인을 지정하</u> <u>여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u> <u>우 통역의 절차와 방법, 그 밖</u> <u>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u> <u>로 정한다.</u>